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온·오프라인 상의 불법·유해정보 감시 등 불법 성산업 방지 사업에 협력하도록 위촉된 시민을 서울시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 활동은 온·오프라인상의 성매매 알선·광고 등 불법·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함으로써 자발적 시민 참여를 통해 불법 성산업 방지 및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이라 함은 시정 참여에 관심이 많은 시민 중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발, 위촉된 자를 말한다.
2. “운영부서”라 함은 인터넷 시민 감시단 운영 전반을 기획·조정·분석·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청의 실무부서를 말한다.
3. “신고 대상”이라 함은 성매매 알선·광고 등 불법 사이트 및 게시물(유흥업소 홍보, 방문화 가이드, 출장마사지,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 정보),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 없는 음란성 정보(한국어로 서비스 되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, 뉴미디어,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), 불법 음란성 전단지

제4조(활동범위 및 주요 임무) ①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근거하여 활동한다.

1. 청소년보호법
2.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
3.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②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은 “운영부서”에서 지정한 전용 커뮤니티에서의 온라인 활동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에 의해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 할 수 있다.

③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불법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제안 및 홍보
2.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·광고 등 불법·유해 콘텐츠 감시 및 신고
3. 오프라인상의 불법 음란성 전단지 신고
4. 기타 여성·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조성과 관련된 협력활동

제5조(활동의 제한)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.

1. 사회질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집단행동을 취하는 경우
2. 정관 작성 등 법인설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
3. 선거활동, 정당대회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
4. 기타 제도운영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

제6조(신고 등 처리) ① 운영부서는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, 자체검증 과정을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(사)한국

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삭제 심의요청 등을 하여야 하며, 사안에 따라 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② 운영부서는 자체검증 과정에서 “신고대상”의 수정·보완이 필요한 경우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에게 수정·보완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, 7일 이내 수정·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“신고대상”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③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이 불법 성산업 방지 정책, 운영제반 사항 등에 대한 문의를 제시하는 경우 3일 이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판단을 요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그 사유 통보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.

④ 운영부서는 심의요청·심의결과, 수사의뢰 및 결과 등을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제7조(활동의 혜택) ①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은 전용 커뮤니티에 등록된 신고 활동 실적에 따라 6건 당 1시간의 봉사활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② “운영부서”에서는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 중 상·하반기 우수활동자를 40명씩 선정하고, 활동실적에 따라 3매~25매까지의 문화상품권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.

③ “운영부서”에서는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 중 최우수 활동자를 선발하여 시장포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.

제 3장 선발·위촉·해촉

제8조(선발) ①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은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높고 신고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불법 성산업 방지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선발한다.

② 이미 다른 시정 모니터링단으로 활동 중인 자라 하더라도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을 겸임할 수 있다.

제9조(결격 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으로 위촉할 수 없다.

1.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 신고대상 운영자·종사자 및 관련자
2. 불건전한 생활 등으로 주변의 평판이 좋지 않은 자
3.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

제10조(임기)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당사자가 연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임 신청을 해야 하며, 운영부서는 연임 신청자의 활동실적, 기여도 등에 근거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인원)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은 서울시민이거나 서울소재 대학생, 직장인 등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 1천여명을 기준으로 구성하되, 탈퇴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.

제12조(위촉장 수여)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서울시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13조(위촉의 효과)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당사자 개인의 명예 외에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.

제14조(활동정지 및 해촉) ①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“운영부서”는 해당자의 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.

1. 자진하여 활동을 정지할 경우
2. 위촉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제14조 4항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

②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“운영부서”는 해당자를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촉 당시 제출한 인적사항 등 기초자료가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
2. 다른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등 「인터넷 시민 감시단 윤리강령」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
3. 기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
③ 운영부서는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 해촉 시 해당 결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.

제15조(운영지침) 이 세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“인터넷 시민 감시단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15. 2. 23 부터 시행한다.